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1월 22일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3년 11월 6일
-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0일
- 라. 상정일자: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3.11.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 제안이유

- 직접적인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각종 사고·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안전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마. 관계 기관 업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안전체험관 인력배치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사. 개관·휴관, 이용방법, 이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 아. 시설 관리,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나. 예산조치: 따로 붙임(비용추계서 참조)
- 다. 합 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3. 10. 6.~10. 26.)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개선의견 수용
 -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시 구민의 특성과 여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항을 적극 고려 하도록 명시할 것 → 해당 개선의견은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 최종 반영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가. 제정 취지

- 본 조례 제정안은 직접적인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각종 사고·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주요 제정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구청장은 안전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 시책의 수립과 시행 시, 구민의 특성(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항을 적극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

○ 안전체험관 기능(안 제5조)

- 안전체험교육, 자치구 민방위 교육,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등 안전체험관의 기능을 규정함

○ 업무협의체(안 제6조)

- 안전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3개 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 이는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수요파악, 재정 지원 등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사료됨

○ 인력배치, 자원봉사자(안 제7조~제8조)

-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와 질서유지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배치, 실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향후, 안정적인 운영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임

○ 개관 및 휴관(안 제9조)

- 안전체험관의 운영일 명시
 - 휴관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며,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
 - 개관시간은 오전9시 ~ 오후6시
 - 개관 시간 및 휴관일 조정 시, 미리 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 게시

○ 이용방법, 이용료(안 제10조~제11조)

- 안전체험관의 이용 방법을 규정하였고,
 - 사전 예약제 운영 원칙(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제외)
 -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
 - 안전체험관 이용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 이용료는 무료로 함
- 주민들의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체험 기회와 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입장 및 행위의 제한(안 제12조~제13조)

- 안전체험관의 입장 및 시설 내 행위 제한 사항을 명시함

○ 재산 및 물품 관리 등(안 제14조)

- 안전체험관 내 전시품 및 체험시설 훼손에 대한 배상과 안전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전체험관 이용자를 위한 보험가입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안 제15조~제16조)

- 안전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재산·물품의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안 제17조)

- 안전체험관의 나머지 여유 공간은 구민들의 문화·여가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예산 지원(안 제18조)

- 안전체험관 시설물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고, 전문성확보와 다양화 개선 사업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다. 종합 의견

○ 정부는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전체험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까지 전국 안전체험관은 대형 25개소, 중형 9개소, 소형 459개소, 특성화 9개소¹⁾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서구가 최초로 대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임.

○ 본 제정안은 2024년 2월 개관을 앞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의 안전체험교육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입법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전국 안전체험관 현황

구분		순면적	연면적	체험존 개수	개소 수
합 계					502
일반 체험관	대형	1,500㎡ 이상	2,200㎡ 이상	6개 이상(10개 체험실 필수)	25
	중형	900~1,500㎡	1,500㎡~2,200㎡	3개 이상(6개 체험실 필수)	9
	소형	900㎡ 미만	1,500㎡ 미만	1개 이상(3개 체험실 필수)	459
특성화 체험관		1,500㎡ 이상	2,200㎡ 이상	1개 특성화 체험존(교통안전재난, 산업재난) +일반 체험존	9

- 다만, 안전체험관 운영비로 연간 11억 9,400만원²⁾이 소요되는 바, 재원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신속한 규칙 제정으로 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전체험관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법령 1부.

2)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국비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1,990,000
	시비	342,200	342,200	342,200	342,200	342,200	1,711,000
	구비	453,800	453,800	453,800	453,800	453,800	2,269,000
	소계	1,194,000	1,194,000	1,194,000	1,194,000	1,194,000	5,970,000
세출	국비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1,990,000
	시비	342,200	342,200	342,200	342,200	342,200	1,711,000
	구비	453,800	453,800	453,800	453,800	453,800	2,269,000
	소계	1,194,000	1,194,000	1,194,000	1,194,000	1,194,000	5,970,000

※ 운영비 1,194,000천원

(국비 398,000천원[33.3%, 시비 342,200천원[28.7%, 구비 453,800천원[38.0%])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안전체험교육 강사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 유지·보수, 콘텐츠 개발비 등

참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현황

□ 시설개요

- 건립목적: 직접적인 재난체험교육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삶 도모
- 위치/기간: 강서구 내발산동 739(발산근린공원 내) / ' 17. 5. ~ ' 24. 2.



- 건립규모: 지상 3층, 건축면적 1,515.75㎡, 연면적 3,825.60㎡
- 총사업비: 200억 원 [국비70억, 시비65억, 구비65억] *사업비 증액 추진 중(33억)

□ 추진경과

- 발산빗물저류조 약취 및 우범지대로 인한 지속적인 복개 및 개발 요구
- 17 ~ 18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17. 5월) 및 유관기관 MOU 체결(서울시·서울시 교육청·강서구)
- 20. 6월: 안전교육센터 건축물 기초공사(발산빗물저류조 복개 연계) 착공
- 22. 3~6월: 안전교육센터 신축공사 착공 및 전시체험시설 실시설계 착공
- 23. 10월: 건축공사 공정률(85.9%),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공정률(46.9%)

□ 운영계획(안)

- 교육대상: 연간 14만명[우리 구 7만명(학생 5.5만명, 민방위대원 1.5만명) + 인근 지역 7만명]
- 콘텐츠 구성: 6개 분야 12개 프로그램

대 상	분야(체험존)	프로그램(체험실)
민방위/학생 공 통	교통안전	① 보행안전(주야간 보행 등) ② 버스안전(안전벨트 착용 등) ③ 지하철안전(선로탈출 등)
	자연재난	④ 기후성 재난(태풍 등) ⑤ 지진 체험(지진 및 여진체험)
	화재안전	⑥ 화재안전(소화기체험, 완강기VR체험 등) ⑦ 시설안전(전기·가스안전 등)
	보건안전	⑧ 응급처치(지혈·골절, 심폐소생술, 감염병 교육 등)
민방위 특화	사회기반안전	⑨ 화생방/민방위(화학·생물학·방사능 등) ⑩※ 4D 체험/대강당(공통)
학 생 특 화	범죄안전	⑩ 미아안전(미아 피해 등) ⑪ 신변안전(폭력, 약물중독 등)

□ 2024년도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서울시 교육청)	시 비	구 비	비고
총 계	4,494	1,498	1,442	1,554	
건립비(증액분)	3,300	1,100	1,100	1,100	
운영비	1,194	398	342	454	

참 고

전국 안전체험관 현황

□ 전국 안전체험관 현황 : 502개

구분	순면적	연면적	체험존 개수	개소 수	
합 계				502	
일반 체험관	대형	1,500㎡ 이상	2,200㎡ 이상	6개 이상(10개 체험실 필수)	25
	중형	900~1,500㎡	1,500㎡~2,200㎡	3개 이상(6개 체험실 필수)	9
	소형	900㎡ 미만	1,500㎡ 미만	1개 이상(3개 체험실 필수)	459
특성화 체험관	1,500㎡ 이상	2,200㎡ 이상	1개 특성화 체험존 (교통안전, 재난, 산업재난) + 일반 체험존	9	

1. 대형 안전체험관 : 25개

연번	규모	관리주체	운영주체	소재지		명칭
				광역시·도	시·군·구	
1	대형	지자체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서울	성북구	서울시민방위교육장
2	대형	지자체	한국어린이안전재단(민간)	서울	송파구	송파안전체험교육관
3	대형	지자체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서울	광진구	서울 광나루안전체험관
4	대형	지자체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서울	동작구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
5	대형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도봉구	서울 국민안전체험관
6	대형	지자체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 안전교육센터(설립 중)
7	대형	소방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	금정구	부산119안전체험관
8	대형	교육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	강서구	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
9	대형	소방청	대구소방본부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10	대형	교육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11	대형	소방청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주	북구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12	대형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13	대형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	양주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14	대형	소방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오산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15	대형	지자체	태백시청	강원	태백시	한국안전체험관(365세이프타운)
16	대형	교육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	제천시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안전체험관
17	대형	소방청	충청남도소방본부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안전체험관
18	대형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충남	공주시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학생안전체험관
19	대형	행정안전부	국기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충남	공주시	재난안전체험관
20	대형	소방청	전북소방본부	전북	임실군	전북119안전체험관
21	대형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전남	영광군	전남 안전체험 학습장
22	대형	교육부	경상북도교육청	경북	경주시	(가칭)경북교육청 경주안전체험관(설립 중)
23	대형	교육부	경상북도교육청	경북	의성군	경북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
24	대형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경남	진주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관
25	대형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경남	양산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설립 중)

2. 중형 안전체험관: 9개

연번	규모	관리주체	운영주체	소재지		명칭
				광역시·도	시·군·구	
1	중형	지자체	부산 금정구청	부산	금정구	민방위실전훈련센터
2	중형	소방청	충북소방본부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3	중형	소방청	경남소방본부	경남	합천군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4	중형	소방청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	제주시	제주안전체험관
5	중형	지자체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	천안시 어린이안전체험장
6	중형	교육부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대구	달서구	대구유아교육진흥원 안전체험관
7	중형	교육부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	연천군	경기도연천학생야영장 안전체험관
8	중형	교육부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	부안군	전북 해양안전체험관
9	중형	지자체	울진군청	경북	울진군	울진안전체험관

3. 특성화 안전체험관: 9개

연번	유형	관리주체	운영주체	소재지		명칭
				광역시·도	시·군·구	
1	특성화 (대형)	해양수산부	경기도	경기	안산시	경기해양안전체험관
2	특성화 (대형)	지자체	한서대학교 재난안전교육원	충남	태안군	한서대학교 재난안전교육원
3	특성화 (대형)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예정)	전남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4	특성화 (대형)	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북	상주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5	특성화 (대형)	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화성시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6	특성화 (대형)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	북구	울산 국민안전체험관
7	특성화 (대형)	소방청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인천	서구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8	특성화 (중형)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해양재난대응실습장
9	특성화 (중형)	지자체	대전 마케팅공사	대전	유성	대전교통문화연수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3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9조(안전체험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8호, 2023. 5. 4.,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2호, 2020. 5. 26.,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